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3.01.15.
개정 2014.06.25.
개정 2017.02.22.
개정 2018.10.30.
개정 2022.02.21.

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.)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계를 비롯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각계의 경험 및 학식 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체육회의 발전방안 심의·자문 등과 이사회에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7.2.22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.

- ① 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사업 방향 설정 <개정 2014.6.25.>
- ② 가맹단체 및 지부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- ③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본방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6.25.>
- ⑤ 후원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항
- ⑥ 그 밖에 장애인체육발전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총괄평가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21.>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7.2.22., 2018.10.30.>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7.2.22., 2018.10.30.>

제4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연임가능)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- ②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위원장

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